

대전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단118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경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변 론 종 결 2021. 9. 7.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274,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74,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행은 B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8. 6. 29.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전77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8.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21,895,888원 및 그 중 5,926,433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11.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2021. 5. 27.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30,274,830원이다. 라. B의 처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3. 16.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B과 자녀들인 E, F, G,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B의 법정상속분 3/11, 피고 등 나머지 4인의 법정상속분 각 2/11)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8.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3/11(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9. 10. 18.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인 2007. 7. 19.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295,2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이자 채권 일부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11. 27.

확정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 아직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J이 2011. 9. 22.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 부부와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도 다른 거주지로 이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관련한 피담보채무 및 망인의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3, 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J이 2011. 9. 22.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망인에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는 후에 H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새로이 취득하고, 기존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의 채권최고액 295,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앞서 든 증거에 갑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3월 기준 시가가 4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141,671,6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1. 9. 7.의 시가도 같은 액수 정도일 것으로 추인되며, J은 2011. 9. 22.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32,271,357원[(450,000,000원 -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41,671,690원 - 위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 3/11, 원 미만 버림]이다.

4) 당심 변론종결일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5. 27.까지의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30,274,83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사해행위로서 위 상속지분의 공동담보가액 32,271,357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0,274,830원 중 더 작은 금액인 30,274,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274,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명희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 ,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3층 2855.7575㎡

지2층 3350.5373㎡

지1층 3060.7996㎡

1층 1843.31㎡

2층 2019.3784㎡

3층 859.4545㎡

4층 859.4545㎡

5층 1162.6969㎡

6층 1162.6969㎡

7층 1162.6969㎡

8층 1162.6969㎡

9층 1162.6969㎡

10층 1162.6969㎡

11층 1162.6969㎡

12층 1162.6969㎡

13층 1162.6969㎡

14층 1162.6969㎡

15층 1162.6969㎡

16층 1162.6969㎡

17층 1162.6969㎡

18층 1162.6969㎡

19층 947.6733㎡

20층 947.6733㎡

21층 947.6733㎡

22층 947.6733㎡

23층 947.6733㎡

24층 947.6733㎡

25층 947.6733㎡

26층 651.1070㎡

27층 651.1070㎡

28층 651.1070㎡

옥탑1층 19.8㎡

옥탑2층 77.4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남양주시		대 3805m ²
2. 경기도 남양주시		대 793m ²
3. 경기도 남양주시		대 503m ²
4. 경기도 남양주시		대 582m 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4.8468m²

대지권의 표시

1, 2, 3, 4 소유권대지권 5683분의 25.701. 끝.

